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18
----------	-------

발의연월일 : 2026. 1. 29.

발 의 자 : 문금주 · 손명수 · 전진숙
임미애 · 이정문 · 송옥주
이원택 · 문대림 · 신장식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하역사업자 중심의 안전관리가 강화됨. 이를 통해 항만사업장의 재해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항만하역사업자 소속 종사자의 사망사고 또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하역사 외에도 줄잡이, 화물고정업, 검수·검량·감정 등 소규모 항만운송업체 종사자의 사망사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항만 전반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자에게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항만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항만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안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항만출입자”란 제5호 및 제6호의 항만운송 참여자와 종사자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항만을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항만시설·장비의 설치·유지·보수와 임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만, 「항만법」 제2조제7호의 항만개발사업과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 및 이와 유사한 대규모 공사 수행을 목적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항만 내 검역·방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육상과 항만 간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항만운송 참여자 또는 항만출입자를 고용·사용하는 사업주는

항만운송 종사자 또는 항만출입자가 항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행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따르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의 안전확보 의무) ① 항만운송 종사자와 항만출입자(이하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라 한다)는 항만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항만운송 종사자등은 항만운송 참여자 또는 항만출입자를 고용·사용하는 사업주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관리·감독조치를 따라야 한다.

③ 항만운송 종사자 등은 항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행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8조의2(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이하 “항만안전수칙”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 제9조의3, 제11조의2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9조의2(항만안전점검관 등) ① 항만에서 제8조의2에 따른 항만운송 종사자 등의 항만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둔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소속 직원을 임면·지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1항의 항만안전수칙 준수여부의 확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및 시정조치 업무 수행에 한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임면·지정 또는 위촉 및 직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 등) ① 항만안전점검관 또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은 관할 항만 내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는지와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제8조의2에 따른 항만안전수칙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항만안전점검관 또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소속·성명·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운송 종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2(항만안전평가) ① 관리청은 관할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안전비용 투자에 관한 사항
2. 안전인력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실시 및 시정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
6. 항만안전수칙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선사와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 참여자 간, 항만운송 참여자와 항만운송 종사자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항만의 안전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평가를 위해 항만하역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하역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항만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항만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평가의 구체적인 대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2(출입의 정지) 항만안전점검관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항만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하의 출입정지를 명하거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에게 30일 이하의 출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받은 항만시설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와 출입시스템 관리자가 다른 경우 항만안전점검관은 출입시스템 관리자에게 출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받은 출입시스템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항만운송 종사자 또는 항만출입자가 제8조의2에 따른 항만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항만운송 종사자를 고용·사용하는 항만운송 참여자 또는 항만출입자를 고용·사용하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항만운송 참여자 또는 항만출

입자를 고용·사용하는 사업주가 항만운송 종사자 또는 항만출입자에게 제6조제3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따르도록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u>“항만출입자”란 제5호 및 제6호의 항만운송 참여자와 종사자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항만을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u> <u>가. 항만시설·장비의 설치·유지·보수와 임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만, 「항만법」 제2조제7호의 항만개발사업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 및 이와 유사한 대규모 공사 수행을 목적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자는 제외한다.</u> <u>나. 항만 내 검역·방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u> <u>다. 육상과 항만 간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u>

7.·8. (생략)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 보 의무)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u>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 지 아니한 자</u> 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제6조(항만운송 참여자의 안전확 보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항만운송 참여자 또는 항만 출입자를 고용·사용하는 사업 주는 항만운송 종사자 또는 항 만출입자가 항만 내에서 안전하 게 이동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행하는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조치를 따르도록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u> <u>제6조의2(항만운송 종사자 등의 안전확보 의무) ① 항만운송 종 사자와 항만출입자(이하 “항만 운송 종사자 등”이라 한다)는 항만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 여야 한다.</u> <u>② 항만운송 종사자등은 항만운 송 참여자 또는 항만출입자를 고용·사용하는 사업주가 제6</u>
--	---

<신 설>

제9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승인 등) ① ~ ④ (생략)

⑤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
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
정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둔

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
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관리·감
독조치를 따라야 한다.

③ 항만운송 종사자 등은 항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행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8조의2(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수칙)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
조의2제3항에 따라 항만운송 종
사자 등이 항만에서 항만안전사
고 예방을 위하여 지켜야 할 구
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해
양수산부령으로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이하 “항만안
전수칙”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
다.

제9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승인 등) ① ~ ④ (현행과 같
음)

<삭 제>

다.

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항만 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소속 직원을 임면·지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 수행에 한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 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임면·지정 또는 위촉 및 직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삭 제>

<삭 제>

제9조의2(항만안전점검관 등) ① 항만에서 제8조의2에 따른 항만 운송 종사자 등의 항만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및 제4항

<신 설>

에 따른 시정조치 업무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둔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 소속 직원을 임면·지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1항의 항만안전수칙 준수여부의 확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및 시정조치 업무 수행에 한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 임면·지정 또는 위촉 및 직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 등) ① 항만안전점검관 또는 항

<신 설>

만안전점검요원은 관할 항만 내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는지와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제8조의2에 따른 항만안전수칙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항만안전점검관 또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소속·성명·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운송 종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2(항만안전평가) ① 관리는 관할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안전비용 투자에 관한 사항
2. 안전인력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실시 및 시정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현
황

6. 항만안전수칙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선사와 항만운송 참여자, 항
만운송 참여자 간, 항만운송
참여자와 항만운송 종사자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항만의 안전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서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
안전평가를 위해 항만하역사업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만하역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
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항만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항만하
역사업자에게 「항만법」 제42
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

<신 설>

료 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항만안전평가의 구체적인 대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2(출입의 정지) 항만안전점검관은 제9조의3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 종사자 등이 항만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하의 출입정지를 명하거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에게 30일 이하의 출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받은 항만시설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소유자와 출입시스템 관리자가 다른 경우 항만안전점검관은 출입시스템 관리자에게 출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제17조(과태료) <신 설> ① · ② (생 략)	<u>경우 출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 받은 출입시스템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u> 제17조(과태료) ① <u>항만운송 종사자 또는 항만출입자가 제8조의2에 따른 항만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항만운송 종사자를 고용·사용하는 항만운송 참여자 또는 항만출입자를 고용·사용하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항만운송 참여자 또는 항만출입자를 고용·사용하는 사업주가 항만운송 종사자 또는 항만출입자에게 제6조제3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따르도록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	--